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0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0.1.21, 2002.2.4>

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①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②삭제 <1998.12.28>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②삭제 <1998.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양여 또는 전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제5조 (대상사업)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 2005.12.7>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1993.6.11>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납부의무자)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2.12.30, 2003.5.29>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

별법에 의한 공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1997.1.13>

제2절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6.11>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 (기준시점) ①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3.6.11, 2000.1.21>

1. 인가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2. 삭제 <1998.12.28>

3.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6.11>

③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3.6.11>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8.30, 2005.1.14>

②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9.19, 2002.2.4, 2002.12.26>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7.1.13>

⑥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9>

[전문개정 1993.6.11]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3.6.11>

1.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

②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①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93.6.11, 1997.8.30, 1998.9.19, 2002.2.4>

제3절 부과·징수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6.11]

제15조 (납부의 고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2002.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제15조의2 (추징) ①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5조의3 (시효) ①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6조 (납부) 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납부기일전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3.6.11]

제17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목적에 따른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9.19>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3.6.11]

제18조 (납부의 독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체납처분등) ①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 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중에서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19조의2 (결손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종료되고 그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할 때
2.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 (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전문개정 1993.6.11]

제21조 (자료의 통보) 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납부의무자·부과금액·사업기간 및 부과일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3장 보칙

제22조 (행정심판의 특례) ①개발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삭제 <1998.9.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개정 1993.6.11, 1998.9.19, 2002.2.4>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2.12.26>

제24조 (벌칙) ①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과태료)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권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43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부칙 <제4563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부칙 <제5285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9호,1997.8.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72호,19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86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제6202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65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32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061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액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09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12.1 대통령령 1916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12, 2000.5.10>

②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2.8.25, 1993.8.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간중 제2차연도 이후의 각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개시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④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6호 또는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에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개정 2000.5.10, 2002.12.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기에금이자율은 100분의 8로 하고, 분기별 정기에금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00.5.10>

제3조 (징수금의 배분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신설 1996.12.3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0.5.10>

④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

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7.6.25>

제4조 (대상사업)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7.6.25>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2의2.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3.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개발사업이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7.6.25>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6.25>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 (조합의 범위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0.8.2, 2003.6.30, 2003.11.29>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5.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지일부터 30일로 한다.<신설 2000.5.10>

[본조신설 1993.8.12]

제5조 (부과제외 및 감면)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8.12, 1996.6.29, 2003.6.30>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삭제 <1993.8.12>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관광단지조성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2.8.25, 1993.8.12, 1994.9.1, 1995.7.6, 1996.2.15, 1996.12.31, 1997.6.25, 1997.11.19, 1999.2.1, 2000.2.14, 2000.5.1, 2000.5.10, 2002.3.2,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11.3>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다음 각목의 정부투자기관
 - 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 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아. 삭제 <2000.5.10>
 -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너.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③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3.8.12, 1995.7.6, 1996.12.31, 2003.11.29, 2003.12.30, 2004.11.3>

1.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3.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만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④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7.6.25, 2000.5.10, 2002.12.26>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설치사업

4. 별표 1<%생략:별표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

제6조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용도지역·지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3.8.12]

제6조의2 (부과개시시점의 예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10>

1.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②삭제 <2000.5.10>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7.6.25>

1.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2.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본조신설 1993.8.12]

제7조 (개발사업의 인가일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정 1997.6.25>

1.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2.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전문개정 1993.8.12]

제8조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6.25>

1.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

③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제1항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8.12]

제8조의2 삭제 <1998.12.31>

제9조 (지가의 산정)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2.15, 1997.6.25, 2003.11.29>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가격결정 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된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6.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6.25>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
3.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4.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대상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⑤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6.25>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전문개정 1993.8.12]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8.25, 1993.8.12, 1997.6.25>

1.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7. 개량비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9.13, 1993.8.12, 1996.12.31>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1.9.13, 1993.5.26, 1993.8.12, 1996.12.31>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④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9.13, 1992.8.25, 1993.5.26, 1993.8.12, 1994.12.23, 2000.5.1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1.9.13, 1993.8.12, 1994.12.23>

제11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12, 2001.12.31>

제12조 (부과금액의 산정) ①법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이 분기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전분기 정상지

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분기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2, 2000.5.10>

②별표 1<%생략:별표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의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92.8.25]

제12조의2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선물업자의 연혁·조직 등에 관한 사항
2. 선물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등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5. 선물업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 고객예탁금 및 고객예탁유가증권 등 예탁재산의 현황 및 그 보호에 관한 사항
7.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선물업자 또는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제2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9. 그 밖에 선물업자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1]

제13조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8.25, 1993.8.12, 1994.12.23>

②삭제 <2000.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비용내역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3.8.12, 1994.12.23>

제14조 (고지전 심사)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3.8.12, 1994.12.23>

②고지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4. 고지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9.13, 1994.12.23>

④고지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전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명세
3. 부과기준과 부담금
4. 심사결과

제14조의2 (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3.4.7>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전문개정 1997.6.25]

제15조 (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제16조 (납부의 고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17조 (부담금의 정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신설 1992.8.25, 1993.8.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2.8.25>

제17조의2 (부담금의 추정)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1.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개정 1994.12.23, 1997.6.25, 1998.12.31>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5, 1998.12.31>

⑥제13조·제14조·제15조 및 제16조와 법 제16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추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6.25, 1998.12.31>

[본조신설 1993.8.12]

제18조 (물납)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2, 1994.12.23, 1996.12.31, 2000.5.1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2000.5.10>

제18조의2 (납부기일전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일전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일을 부담금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일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8.12]

제19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5.10>

1. 택지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③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연 100분의 8의 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5.10>

[전문개정 1993.8.12]

제19조의2 (결손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4.7]

제20조 (개발사업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0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9.13, 1992.8.25, 1993.8.12, 1994.12.23, 1996.12.31, 1997.6.25, 1998.12.31, 2003.4.7>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

1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
- 2의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인정 및 징수
- 3의2.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독촉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 6의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접수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통보 및 접수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0.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및 통지
11.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의뢰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등의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도예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의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0.5.10>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12.31, 2000.5.1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12.31, 1998.12.31>

⑥제5항에서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⑦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에 지급한다. <개정 1996.12.31>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제12936호,1990.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중에서 전체사업시행기간중의 1990년 3월 2일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②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년 3월 2일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8.12>

[전문개정 1991.9.1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②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465호,1991.9.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건설사업등의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택지개발사업중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등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여객자동차터미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터	
널사업 및 화	터미널법및	미널사업 및	
물터미널사업	화물유통촉	화물터미널사	
	진법	업	
+-----+-----+-----+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13718호,1992.8.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1항 후단, 제9조제3항 및 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이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이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업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내지 <19>생략

부칙 <제13956호,1993.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는 경우 중에서 당해 용도지역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본다.

부칙(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 <제14373호,1994.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3>생략

<21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15>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205>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제3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⑫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제9조제1항제6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로 한다.

⑮내지 <31>생략

부칙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각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1 제5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각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2 제5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각각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238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새로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3항·제9조제3항·제12조 및 별표 1(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98호,1997.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호·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항·제5항·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6조의2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사업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생략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97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98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내지 ⑪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내지 <23>생략

부칙(산림조합법시행령) <제16798호,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제5조 생략

부칙 <제16807호,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30>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6927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으로 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업 및 화물터미널사	법 또는 화물유통촉	업 또는 화물터미널
업	진법	사업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각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

는 화물터미널사업"으로 한다.

부칙(도시개발법시행령) <제16933호,2000.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86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0호의 근거법률란의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란 다음에 도시개발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	---------------------------

별표 2 제10호의 공원사업란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	---------	-------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인세법시행령) <제1745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9조 생략

제30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및 후단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제8호 및 제10호의 근거법률란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명란중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각각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제10호의 사업명란중 "도시계획법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963호,2003.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		
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한다)		

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경우를 제외한다)			

②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
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내지 <54>생략

부칙(항만공사법시행령) <제18147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⑤내지 ⑩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②내지 <28>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어촌·어항법 시행령)<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 3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5.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3조 (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개정 1998.12.29>)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개정 1997.2.15>

제3조의2 (부담금부과대상사업 등의 범위) ①영 별표 1중<%생략:별표1%>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개정 1997.2.15>

②영 별표 1중<%생략:별표1%>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7.2.15>

③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시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2.15>

④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2.15, 2000.5.25>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제41조·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⑥영 별표 1중<%생략:별표1%>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2.15>

[전문개정 1993.8.12]

제3조의3 (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3조의4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0.5.25>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7.2.15]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②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1. 삭제<1994.8.5>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 (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각호의 법인

[본조신설 1993.8.12]

제4조의3 (지가산정방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시점 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7.11]

제5조 (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 (고지전 심사청구서)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 (납부고지서 등) 영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92.10.26, 1993.8.12>

제8조 (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9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0조 (물납신청서)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2002.11.21>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1조 (납부연기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2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제13조 (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4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5, 1997.2.15>

[전문개정 1993.8.12]

제15조 (자료의 통보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 18%> 의한다.

제15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2.15]

제16조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개정 1994.8.5>

제17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부칙 <제462호,199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199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1992.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19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199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호,19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19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245호,2000.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을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57호,2000.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제1항"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37호,2002.11.2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43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 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내지 ①생략

제5조 생략